##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53 발의연월일 : 2022. 3. 24.

발 의 자:서동용ㆍ권인숙ㆍ김정호

김철민 • 도종환 • 송옥주

안민석 • 유기홍 • 이소영

이수진(비) · 인재근 의원

(11인)

## 제안이유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2017년 전북 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홍수연 양 사망사고처럼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내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해 왔음.

## 주요내용

이에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9조의6)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안 제27조제2항)을 추가해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법률 제 호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부당한 대우의 금지)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 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또는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직업교육훈련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의6(부당한 대우의 금지)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
	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직업교육
	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또는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
	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
	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신체
	<u>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u>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
	<u>여서는 아니 된다.</u>
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직업
	교육훈련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③ 제1항 및 제2항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